

##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진형건설(주)(구자화) ② 쌍용건설(주)(김석준) ③ (주)유신(성낙일) ④ (주)평화엔지니어링(권재원) ⑤ (주)동일기술공사(황주환, 김수보, 강창호)

나. 전화번호 : ① 031-983-6755 ② 02-3433-7731 ③ 02-6202-0590 ④ 031-420-7831 ⑤ 02-3400-5612

2. 명칭 : 힌지형 링크 연결을 통해 소음을 저감하고 이물질 차단판이 구비된 교량용 신축이음 공법

##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 교량 / 교량 부속 시설물

토목 / 교량 / 교량 유지보수

<기술의 요지>

본 신청기술은 신축이음부에서 발생하는 충격소음을 개선 하기 위해 강제링크를 구비하여 강제링크를 서로 회전힌지 형태로 연결하고 연결된 링크는 회전힌지를 통해 회전거동하여 교량의 신축거동을 수용하는 신축이음공법으로 충격과 소음을 감소를 실현시키며 링크의 회전거동으로 중·횡으로 거동이 가능하다, 특히 링크하부에 강제로 구성된 이물질 차단판을 구비해 교량 하부로 이물질 유입을 방지하는 신축이음 공법이다.

<범위>

강제링크의 회전거동으로 교량의 신축거동을 수용하며 신축용량 35mm~800mm까지 적용된다. 강제링크는 힌지 형태로 서로 연결되고 강제링크 하부에 이물질 차단판을 구비하는 신축이음 공법이다.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 ●국토교통부공고제2017-1743호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12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지정 신청

##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주)엑트파트너(고수진) ② (주)포스코건설(한찬건) ③ 대우조선해양건설(주)(현동호/추연정) ④ (주)간삼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김태집) ⑤ (주)쓰리디엔지니어링(정석재)

나. 전화번호 : ① 070-7600-3251 ② 032-748-1752 ③ 02-750-8311 ④ 02-2250-6640 ⑤ 02-2115-8855

2. 명칭 : 역U형 상부강판과 날개달린 U형 하부강판을 용접 조립한 박스형 세미슬림플로어 합성보 공법 (AU 합성보 공법)

## 3. 내용요약

<분야>

건축 > 철골 > 복합 구조체

<기술의 요지>

신청기술은 날개달린 U형 하부강판 상부에 역U형 상부강판을 용접하여 제작된 박스형 강재 보의 중간플랜지 위에 슬래브를 일체로 형성한 합성보 공법으로, 벌어짐과 비틀림, 기둥과 접합되는 단부에서 부모멘트 저항성능 및 콘크리트 구속효과에 유리한 폐단면 구조이고, 역U형 상부강판이 슬래브에 매입되어 시어커넥터로 기능하여 슬래브와 일체로 합성되며, 중간플랜지 위에 딥데크(deep deck)를 시공할 수 있어 층고절감과 장스팬 슬래브 구현이 가능하고, 내화뿔철재 2시간(16mm)과 3시간(21mm)의 내화성능을 확보한 합성보 공법이다.

<범위>

날개달린 U형 하부강판 상부에 역U형 상부강판을 용접하여 제작된 폐단면 강재 보의 중간플랜지 위에 슬래브를 일체로 형성한 박스형 세미슬림플로어 합성보 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8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 ●국토교통부공고제2017-1744호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12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지정 신청